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중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448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2월 09일

발 의 자: 김원중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길영, 김영옥,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신복자, 유만희, 윤기섭,
윤종복, 이상욱, 이성배,
이종환, 이효원, 임춘대,
정지웅, 최민규, 허 훈,
홍국표 의원(28명)

1. 제안이유

- 자전거 이용 안전과 직결되는 규정에 포괄적인 표현을 보완하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조례로 정비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자전거이용에 대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서 기존의 “음주상태”에 대한 내용에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추가하여 약물의 위험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 또한 자전거와 자동차 간 안전 확보 의무를 도로교통법 규정에 맞추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수정함으로써 자전거 안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사문화된 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감면 기준을 삭제하며 “강구”, “의거하여” 등 관행적 행정용어를 “마련”, “따라” 등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여 시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의는”을 “뜻은”으로 수정하여 용어 정의의 정확성을 높임(안 제2조).
- 나. 정의된 용어를 조례 내에서 약칭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정비함(안 제2조, 제9조).
- 다. 조 제목을 간결하게 하여 조문 체계를 명확히 함(안 제3조 제목).
- 라. 자전거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뿐 아니라 약물 영향도 포함하도록 문구를 보완함(안 제3조제4항, 제4조제5항).
- 마. 기존의 포괄적 표현을 도로교통법에 맞추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자동차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제4항).
- 바. 여러 항이 나열되지 않는 조문의 제1항 번호를 삭제하여 조문의 간결성을 확보함(안 제3조의2).
- 사. 유효기간이 지난 공공자전거 이용요금에 대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감면 조항을 삭제함(안 제12조의3제2항제7호 및 제3항)
- 아. “강구”를 “마련”으로, “의거하여”를 “따라” 등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여 변경함(안 제12조의2, 제15조, 제1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첨부)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전거이용민간단체”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서울특별시장 등의 책무)”를 “(시장 등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음주상태”를 “음주 및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강구와”를 “마련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자동차를”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자동차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음주상태”를 “음주 및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민간단체”를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2제7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12조의3제2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의거하여”를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8. (생략)</p> <p>9.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u>민간단체</u>“라 한다)란 <u>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u></p> <p>10. · 11. (생략)</p> <p>제3조(서울특별시시장 등의 책무)</p> <p>① ~ ③ (생략)</p> <p>④ 시장은 <u>자전거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교육·캠페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u></p> <p>⑤ 자치구청장은 <u>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 <u>강구</u>와 함께 자전거도로대장의 작성·보관, 자전거등록업무,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등</u></p>	<p>제2조(정의) ----- ----- <u>뜻은</u>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자전거이용민간단체”란 <u>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u></p> <p>10. · 11. (현행과 같음)</p> <p>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음주 및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u>-----.</p> <p>⑤ ----- ----- ----- ----- <u>마련과</u> ----- ----- -----</p>

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⑥·⑦ (생략)

제3조의2(자전거도로의 설치) ① (생략)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 ③ (생략)

④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⑤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

⑥·⑦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자전거도로의 설치) (현행 제1항과 같음)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자동차를 -----
-----.

⑤ -----
음주 및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

-----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 -----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2조의2(공공자전거 및 공공자전거대여소등의 설치·운영) ① ~ ⑥ (생략)

⑦ 시장은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민간 공유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및 일반자전거 등이 해당 구역에 무단으로 주차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⑧·⑨ (생략)

제12조의3(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감면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 6. (생략)

7.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사람. 다만, 다른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공공자전거 및 공공자전거대여소등의 설치·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마련 -----.

⑧·⑨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6. (현행과 같음)

<삭제>

8.·9.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별 감면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제2항7호에 따른 감면율은 100분의 50범위에서 한다.

제15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 및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를 동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8.·9. (현행과 같음)

③ -----

-----, <단서 삭제>

제15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 -----

----- 마련-----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따라 -----

-----.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변경(서울특별시장 등의 책무 → 시장 등의 책무)하고, 자전거 운전 금지 사유를 구체화하며(음주상태 → 음주 및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자구를 수정(정의는 → 뜻은, 강구와 → 마련과)한 것으로 이는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김 경 명

☎ 02-2180-7954

e-mail : kimkmi0809@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